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49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B 임야 72,793㎡에 관하여 2018. 11. 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양평군 B 임야 72,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피고), 연고자란에 D외3인, 비고란 공란, 공유지연명서의 연고자란에 D, E, F,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기존 요존국유림에 연접한 지역으로 1984. 3. 24. 소유자 미복구 임야로 확인되어 원주영림서(현재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화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경기도 및 양평군에서 무주재산확인서, 미등기 열람, 임야 내 점유현황 및 소유권자 등 무주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또는 연고권자 없음을 확인한 후에 구 국유재산법(1986. 12. 31. 법률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권리보전조치 추진하여 1986. 12. 13. 국(산림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양평군 지역은 일제강점기인 1926. 6. 14. 경성영림서가 설치되고, 그 당시부터 산림경영을 실시하였는데, 1945. 8. 15. 해방 당시에는 농림부 관리국 내 양평임업소, 1955. 7.경 서울영림서 양평분소가 설치되어 집단화된 대규모 요존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영림계획 편성 및 산림사업)을 실시하여 왔다(산림청에서는 요존국유림은 영림서에 직접 관리, 불요존국유림은 지자체에서 위탁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1991. 7. 4. 각 도와 시, 군에서 관리하던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재산에 대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중 개정령(대통령 제13381호, 1991. 5. 31.)’ 및 ‘영림서관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규칙 변경(농림수산부령 제1078호, 1991. 6. 12.)’에 따라 경기도 및 양평군에서 관리하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원주영림서(C)로 국유재산 인수인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라. 그 후 1992. 3. 25. 산림청은 ‘국유림확대집단화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H 자락으로 큰 산 주변의 오지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국유림이라는 이유로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1조 및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7. 12.자로 잡종재산에서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종류 구분한 다음 이를 관리해 왔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ㄱ씨 종중 소유 임야로 종중원인 소외 D, E, F, G 4인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하던 토지인데, 원고 부친인 소외 망 J가 1970. 1.경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연접된 경기도 양평군 K, L, M 임야, N, O 전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임야에 배, 복숭아, 뽕나무를 심고 밭을 개간하여 경작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오다가 J가 1998. 11. 12. 사망한 후에는 아들인 원고가 부친인 J의 농사를 이어받아 계속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J가 사망한 1998. 11. 1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11. 12.자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취득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야는 보전국유림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유림법 제16조 제3항에서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국유임야라 하여 성질상 당연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국유임야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인 공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주체가 그 임야를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실제 사용하거나 장차 사용하기로 결정하든지,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그 임야를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국유임야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피고가 1993. 7. 12.자로 이 사건 임야를 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공용폐지로 인하여 잡종재산이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가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시효취득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